

전주지방법원 2024. 7. 24 선고 2024가단111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C

2. D

변 론 종 결 2024. 7. 10.

판 결 선 고 2024. 7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가. 별지 ‘부동산의 표시’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4,000,000원 및 2024. 3. 16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목록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B에 대한 청구: 민사소송법 제288조(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D에 대한 청구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해빈

별지